



『2007.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11.

영등포구청장

(행정국장)

제안 설명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구정사무 감사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종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후, 낙후된 도시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디자인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와

노령인구 증가 및 만성병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의 수요증가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 요구에 부응하여,

구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소 행정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시의 디자인도시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표준화 개발, 도시 및 가로환경 기반조성 등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기관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설치하고,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자의 증가와 출산장려 시책 추진 등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향상된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업무와 위생업무를 완전 분리시켜 보건의료업무의 행정관리를 위한 보건지원과를 신설하고,

보건위생과의 부서명을 위생과로 변경하여 위생관련 업무만 전담토록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9일이후 약 5개월가량 운영하던 교육지원
담당관의 부서업무는 안정 및 정착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당초의 부서 신설 취지에 맞도록 행정국 소관으로 이관시켜
교육지원과로 변경하고,

금번 신설되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구 전체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사무를 처리할 부서로 일정기간동안 조속한 조직의
정착을 위하여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

- 노후 낙후된 도시이미지의 친환경적이고 독창적인 개선 요구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병 질환자의 증가 추세에 발맞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내용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

< 부서신설 >

-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팀을 이관
 - 공공디자인팀 및 디자인지원팀을 신설
- 보건지원과
 - 보건위생과의 보건기획팀과 보건민원팀을 보건행정팀으로 통합하여 이관

< 행정조직 명칭 변경 >

- 교육지원담당관 ⇒ 교육지원과
- 보건위생과 ⇒ 위생과

< 직속기관 소속 변경 >

- 교육지원담당관 : 부구청장 직속기관에서 행정국으로 소속 변경

※ 참고사항

가.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따로붙임
- 신·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 : 2007. 11. 9 ~ 11. 13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칭을 수요자인 고객위주의 명칭으로 개선하고 유사기능 업무를 통합운영,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담당 부서를 신설 및 변경하여 종전의 분위기와 다른 아름답고 활기찬 도시를 구축함에 있으며,

-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디자인담당관” 과 “ 보건지원과” 를 신설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을 “교육지원과” 로 명칭 변경하여 부구청장 직속기관에서 행정국으로, “보건위생과” 를 “위생과” 로 변경하여 종전대로 보건소에 두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통합 운영하며,
- “도시디자인담당관” 과 “보건지원과” 를 신설함으로 5국1단3담당관24과에서 5국1단3담당관26과로 1담당관, 1개과가 늘어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그 범위내에서 과 단위 이하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종전 표준정원제하의 시·군·구 5급 이상 정원정책과 한시정원 책정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며,
- “도시디자인담당관” 과 “ 보건지원과” 를 신설하므로 분산되어 있는 공공디자인 및 도시미관에 중추적인 역할과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민에게 행복하고 살맛나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으며, 행정조직 명칭변경, 유사기능 업무 통합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29.

보 고 자 : 김 병 욱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6.4.28>

신 · 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u>교육지원담당관</u> 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창의혁신단(한시기구)과 감사담당관, <u>도시디자인담당관</u> 을 둔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여유기구), 민원여권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1.~15호.(생략)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 기획홍보과, 주민자치과(여유기구), <u>교육지원과</u> , 민원여권과 및 전산정보과를 둔다. ② (생략). 1.~15호.(생략) <u>16. 평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신설)</u> <u>17.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신설)</u> <u>18. 과학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u>
제12조(보건소)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및 의약과를 둔다.	제12조(보건소) 보건소에 <u>보건지원과</u> , <u>건강증진과</u> , <u>의약과</u> , <u>위생과</u> 를 둔다.

『2007.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제안실명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 11.

영등포구청장

(행정국장)

제안 설명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대동제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의 통합과 도시경관개선업무 전담부서인 도시디자인담당관과,

보건의료 전담부서인 보건지원과 신설에 따라 기구, 직렬,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 책정하고,

특히 동주민센터와 그동안 기구만 설치되어 현원으로 운영해 오던 교육지원담당관 및 근무자의 정원을 현실화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동주민센터 통합에 대비하여 동주민센터 정원에서 일반직 5급 3명, 일반직6급 6명을 감축하였으며, 그 감축되는 인원으로 구본청 디자인담당관 신설에 따른 일반직5급 1명, 일반직6급 4명, 일반직7급이하 6명을 증원 조정하고
- 지난 7월 19일자 교육지원담당관을 신설 운영하면서 조정하지 못한 일반직5급 1명 정원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며,
- 보건소 보건지원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 또한 동주민센터 직원 정원을 현재의 현원수준으로 조정하고자 정원외 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7급이하 4명과 기능직 53명을 증원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의회사무국 하위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별정직 9급 속기사 정원을 별정직8급 속기사로 직급을 상향하였으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전담인력 2명에 대하여는 본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2007. 12. 31에서 2008. 12. 31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안)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행정기구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 하는 것이며,

특징적인 것으로는 기능직 정원을 「행정기구와 정원기준규정」에 의한 정원기준인 총 정원의 20%를 맞추기 위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12명, 별정직 1명의 정원 13명을 감축시키고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구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원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7. 11. 2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병 육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

- 3개 동사무소의 통합, 도시디자인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보건지원과 신설에 따른 증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구분청 도시디자인담당관, 교육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 6급 4명, 7급이하 6명 증원
- 나. 보건소 보건지원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3명 증원

- 다. 동주민센터 통합에 따라 일반직5급 3명, 6급 6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6급이하 4명을 증원하고, 현원만 배정되어 운영중인 기능직중 동별 필수인력으로 53명을 증원
- 라. 구의회사무국 별정직 9급(속기사) 1명을 별정직 8급(속기사)로 직급상향 조정

■ 직급별 증감 내역

● 구 본 청

<일반직>

- 현행 : 670명(4급이상7명, 5급26명, 6급124명, 7급이하513명)
- 개정 : 682명(4급이상7명, 5급28명, 6급128명, 7급이하519명)
- 증감 :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이하 6명)

<기능직>

- 현행 : 295명(6급 8명, 7급이하 287명)
- 개정 : 230명(6급 8명, 7급이하 222명)
- 증감 : -65명(7급이하 -65명)

● 보건소

<일반직>

- 현행 : 83명(4급이상 1명, 5급 10명, 6급 15명, 7급이하 57명)
- 개정 : 89명(4급이상 1명, 5급 11명, 6급 17명, 7급이하 60명)
- 증감 : +6명(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3명)

<기능직 >

- 현행 : 11명(7급이하 11명)
- 개정 : 11명(7급이하 11명)
- 증감 : 없음

● **구의회사무국** : 변동사항 없음

● **동주민센터**

<일반직 >

- 현행 : 212명(5급 22명, 6급 44명, 7급이하 146명)
- 개정 : 207명(5급 19명, 6급 38명, 7급이하 150명)
- 증감 : -5명(5급 -3명, 6급 -6명, 7급이하 +4명)

<기능직 >

- 현행 : 없음
- 개정 : 53명(7급이하 53명)
- 증감 : +53명(7급이하 53명)

※ **참고사항(따로붙임)**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직급별 정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253호) 제8조(정원채정기준)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직급별 정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 253호) 제8조(정원책정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 구본청 도시디자인담당관과 교육지원담당관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2명, 6급 4명, 7급이하 6명을 증원, 별정직 1명, 기능직 65명이 감소하여 전체 54명이 감소하였으며,
- 보건소는 보건지원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이하 3명을 증원하여 전체 6명이 증원 되었고,
- 구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 동주민센터 통합(영등포2·3동, 도림1·2동, 문래1·2동)에 따라 일반직 5급 3명, 6급 6명 감소, 6급이하 4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중 동별 필수인력으로 53명을 증원하여 전체 4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내용 중 기능직 48명 증원은 현재 동주민센터에 현원으로 배치되어 근무중입니다.
-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면밀한 업무분석과 종합적인 조직 진단을 거쳐 조직 구성원의 이해와 공감속에 조직간 균형있는 정원책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하여야 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 11. 29.

보 고 자 : 김 병 욱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u>제103조</u>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 제3조 (생략)</p>	<p>제1조(목적) ----- <u>제112조</u> ----- ----- ----- ----- -----.</p> <p>제2조 ~ 제3조 (현행과 같음)</p>

신·구조문 대비표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구분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총 계	1,306(6)	1,306(6)	971(6)	917(6)	29	29	94	100	212	260
정무직 계	1	1	1	1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978(6)	991(6)	669(6)	681(6)	14	14	83	89	212	207
3급	1	1	1	1						
4급	7	7	5	5	1	1	1	1		
5급	60	60	26	28	2	2	10	11	22	19
6급	186(1)	186(1)	124(1)	128(1)	3	3	15	17	44	38
7급	273(3)	274(3)	200(3)	198(3)	4	4	25	26	44	46
8급	310(2)	312(2)	220(2)	225(2)	2	2	23	24	65	61
9급	141	151	93	96	2	2	9	10	37	43
별정직 계	14	13	6	5	8	8				
6급상당	5	5	3	3	2	2				
7급상당	6	5	3	2	3	3				
8급상당	2	3			2	3				
9급상당	1	0			1	0				
기능직 계	313	301	295	230	7	7	11	11	0	53
기능6급	8	8	8	8						
기능7급	18	18	18	18						
기능8급	44	41	42	39			2	2		
기능9급	87	86	81	78	3	3	3	3	0	2
기능10급	156	148	146	87	4	4	6	6	0	51

※ ()는 총계에 포함한 정원이며, 한시정원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조 (직급별 정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8.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정원감축을 제외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정원에 대하여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성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5.16, 1995.12.28, 1998.8.31, 2005.2.11, 2005.10.20>

1. 시·도 및 특별시 자치구 : 정무직지방공무원, 일반직 4급이상·연구 별정직 4급상당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
2. 시·군 및 광역시의 자치구 : 일반직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 지방공무원, 기능직 5급 이상 지방공무원, 별정직 5급상당 이상 지방공무원의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 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각호의 정원중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직렬의 공무원정원을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위의 직무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8, 1998.8.31, 2004.12.18, 2005.2.11>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정원책정 기준)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영 제16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담당관 밑에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6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수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3.5.1>

④업무량의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 4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또는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